

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

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. 6. 11.

영 동 군



관련법규: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

폐업신고사항

상 호	성 명	영 업 소 위 치	폐업일자	지 정 구 분
신진상회	박정복	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7-1	2012. 6. 11.	일반소매인

지정 신청기간 : 2012. 6. 12. ~ 2012. 6. 18.(7일간)

신청시 구비서류

-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(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시 미제출 가능)
- 건물등기부 등본 1부 (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시 미제출 가능)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(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일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

지정방법

-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일 경우 다른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투자유치과(☎043-740-37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